

남원시공고 제2012-1015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 30만원으로는 실질적 사기양양이 미흡한 바, 남원출신 청년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기능인력 양성으로 기업 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추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은 공적장부 확인으로 같음.

나.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안 제8조)

- 300,000원 ⇒ 1,000,000원

나. 그 밖에 용어정리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폐지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전화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를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애향장려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 장려금”을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내출신”을 “출신”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2조에서의”를 “제2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인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종전의 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증명서는 공적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300”을 “1,000”으로, “매년”을 “연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장려금”을 “시장은 장려금” 으로, “자는”을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제정) 1995.01.12 조례 제 97호
(일부개정) 1996.06.17 조례 제 2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남원시 관내출신 및 거주자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취업일 기준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로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6월이상 기능직에 종사하는 자.<개정 1996. 6. 17>

제3조(심사) 대상자의 자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취업대상업체) 제2조에서의 중소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 1. 중소기업체(고용인원 5인 이상)
- 2. 기타 시장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5조(추천)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당해 업체대표가 추천서를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기업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기업체의 대표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17>

- 1. 호적등본(남원출신자), 주민등록등본(관내거주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 중 1통
- 2. 재직증명서(공통) 1통

제7조(선정) 시장은 각 업체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발한다.<개정 1996. 6. 17>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300천원을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6. 17>

제9조(홍보요원 위촉)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6. 6. 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6.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